의 안 번 호

1783

【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O 제 출 일 자 : 2021. 6. 25.(금)

O 제 출 자: 중구청장

O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6. 25.(금)

O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7. 13.(화)

2. 제안이유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」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구민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단독 조례로 제정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O 제설·제빙 책임순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제설·제빙 범위 및 시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 ~ 제5조)
- O 제설·제빙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O 제설·제빙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O 제설·제빙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O 제설·제빙도구 비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
4. 근거법규

O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27조

5. 검토의견

-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」내에 조문으로 규정되어 업무추진 시 본 조례를 적용하여 왔으나, 현실 체계에 맞게 구체 적 조문으로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임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